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7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4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상정된 안건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 2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 2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 2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 2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 2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 2

(10시30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는 조문별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병합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수사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핵심적인 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홍기원·서영교 의원님안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오늘 병합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님들에게 법안소위 구성안에 대해서 안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고요. 또 현재 대안으로 원래 광규택·조배숙 그리고 나경원 위원님, 세 분 중에 사보임을

통해서라도 오늘 법안1소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안1소위 위원들을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빨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님에게 간사 선임과 법안소위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법사위가 국민의힘 위원들의 참여 속에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희는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자는 더욱 보호받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보다는 더욱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또 수사과정에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더 완성된 법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10시32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7항으로 새롭게 추가된 김승원 의원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한 후 어제에 이어 쟁점별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위원님, 법안심사자료 2건으로 표시된 부분 75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보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모든 수사과정을 기록·등재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사 전 과정의 전자적 기록·등재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해서 각급 수사기관 장으로 하여금 등재 사항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기록·등재 의무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밑에 표에 보시면 전자적으로 기록·등재하는 사항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피의자 등 접촉, 진술 청취, 압수·수색 등 실시 및 결과, 수사과정에서 수집·생성된 증거 목록 등 그

리고 양형의 조건, 영상 기록의 존재·촬영 일시,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KICS에 등재해야 되고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에도 그 내용을 기록·등재해야 되며 수사행위 수행자 및 지휘·승인자의 신원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며 그 밖에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록·등재 의무 위반 시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피의자 등 피의자 측에서도 이런 등재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러한 수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등재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 그리고 사후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이 세부 내용들은 수사 실무적인 사항이고 이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수사규칙 등에서 많은 부분이 이미 전자화돼서 규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형소법에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중복을 피해서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나 제한 조건 등을 어떻게 할지 보완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보완수사요구 등에서 전자적 방식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 서면, 전자문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검사의 소속·직위·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요구 등에 대해서 피의자한테 안내를 할 때 키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사법경찰관의 소속·직위·성명을 기록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완수사요구 절차라든가 시정조치요구 안내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소법 개정안으로 일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검사의 소속·직위·성명, 사법경찰관의 소속·직위·성명까지 법문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기록 의무화입니다.

압수·수색 시 촬영·녹화 의무를 부여하고 키스에 등재하도록 하며 피해자 등의 영상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뒤에 82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수사공무원은 제2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영장 없이 하는 긴급체포라든가 체포영장 집행 시, 현행법 체포할 때 건조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데요. 이런 걸 할 때에는 반드시 수사공무원은 영상을 촬영·녹화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고, 2항에 보시면 그 외

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압수·수색·검증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촬영·녹화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영상 녹화 의무는 여러 인프라 등을 갖추어야 되고 수사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실무상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영상기록에 대한 피의자 측의 열람·복사 청구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라든가 조건 제한 등의 사항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법왜곡죄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85페이지에 조문대비표를 보면 더 편리하실 텐데요.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253조의5항을 신설해서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법왜곡죄의 죄를 범하여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의 발견 또는 공소의 제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그 법왜곡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308조의2의 2항을 신설해서 ‘법왜곡죄를 범하여 수집하거나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왜곡죄로 인한 범죄의 발견, 공소 제기 곤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만 공소시효 제도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범죄인 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법문에 설시해야 되지만 지금의 상황은 범죄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으로 법문에 돼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증거능력 배제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증거능력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특정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정해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은 판례라든가 다른 직무 관련 범죄와의 형평성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중 법원행정처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등재하는 항목 관련입니다.

개정안이 규정하는 상당 부분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전자화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광범위한 전자기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특사경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은 상황인데 수사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등재하게 할 경우 대대적인 예산 사업이 필요하여 단기간에 구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등 열람·복사 청구권 관련해서 본인 진술 외에 본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열람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수사 보안을 훼손하여 범죄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수사기관에 광범위한 기록 등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효과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산 입력 누락을 이유로 개별 수사행위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을 다투어 실체 진실 발견을 과도하게 저해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18번 보완수사 요구 등에 있어서 전자적 방식 사용 관련해서는 현재도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시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서면 또는 KICS 시스템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고, 보완수사요구서는 기록에 편철되는 공문서로서 작성자의 직위, 성명 등이 이미 표시되고 있는 등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나아가 개정안은 수사 절차의 세부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으로써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9번 압수수색 검증 과정에서의 영상기록 의무화 항목입니다.

수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절차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압수수색 처분이 연간 수십만 건 단위로 집행되고 개정안에 따라 영상기록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도 다수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외 없이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은 실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또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 해시값 비교 등 포렌식 검증 절차를 통해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판례상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번 법외곡죄 관련 특례 신설 항목입니다.

공소시효 정지 부분 관련해서는 법외곡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 대상이 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인데 이는 피의자로서 통제하기 어려운 수사기관의 법외곡 여부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결과가 되어서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범죄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법외곡 행위 종료 등 적용 요건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능력 배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법수사나 증거위조 등에 의한 증거 수집이라면 현행 위법 수집 증거 배제 규정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또한 의도적으로 법령 적용을 잘못된 경우에는 사실행위인 수사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수사기관의 법외곡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자칫하면 수사, 재판의 지연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법무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20항, 법외곡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부분 및 법외곡죄를 범하여 수집하거나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부 쟁점에 관해서는 조문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원래는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셔야 될 차례이나 양해해 주시면 이 법안을 낸 제가 먼저 취지 설명이라든가 질의를 드리고 위원님들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문제의식은 조서는 꾸미기 나름이라는 법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이크 기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수많은 수사 대상이 된 자료, 사실관계 중에서 모자이크 기법에 의해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사실관계, 범죄 사실을 정리하고 그걸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피고인은 증거수집 권한이 없으니까 본인의 범죄를 방어하는 데, 재판에 있어서 방어권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형사법 대원칙으로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그런 식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돼 온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녹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또 보관도 큰 비용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좀 반영하자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교차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예전에는 신호등, 누가 신호를 지켰는지가 정말 쟁점이 많고 그 재판으로 2~3년, 몇 년을 끌었는데 그냥 블랙박스 하나 딱 발명이 되니까 그걸로 그와 관련된 재판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예컨대 압수수색 시에도 바디캠을 갖고 처음부터, 아니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부터 촬영을 하게 되고 보관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변호인이…… 요새는 실체적 진실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증거수집의 위법성부터 다투는 것이 거의 상례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 영상을 갖고 나중에 법원에서 검증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라든가 또 양형자료까지 다 전자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런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물론 장윤기 사건에서 시사받은 컷는데요. 특히나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 아니면 현장에 나갈 때 촬영을 잘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남겨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비용은, 지금 KICS에 대해서 KICS의 수사기록이 전자화돼서 다 보관되는 것은 맞습니까? 차관님,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하고 전자문서법 등에 기해서 지금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전자화가 시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새로 수사를 시작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KICS 등에 자료들을 등재해서 전자화로 사건 기록을 편철하고 증거자료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기록을 송부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사 목록……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수사 목록이라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들은 다 목록화는 시켜 놓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그 목록에서 해당되는 자료들은 지금 다 KICS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거기서도 수사기관에 의한 선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자료들은 다 전자화시켜 놓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혹은 피고인들이 항상 불만인 선별적 증거 제출, 모자이크 기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비용은 얼마나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컨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더 전자화시켜서 용량에다가 보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제가 한 500억 정도 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적게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지금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 관련해서도 특사경이 지명된 기관들이 수십여 개에 이르는데요. 거기는 지금 KICS라고 하는 시스템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망을 깔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일단 그 비용이 상당히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기존의 KICS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량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이 항목 중에 압수수색 검증 과정에서 영상기록 의무화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지금 서버라든지 컴퓨터 압수수색에 하루나 이틀 등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전 과정을 영상화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업로드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저장용량보다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 받으신 분들이 후기로 쓴 책을 보면 하나하나 열면서 그것에 대해서 영상과…… 영장이 압수수색 대상이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 다툼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차라리 남겨 두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위원님들……

김용민 위원님.

저희가 11시에 기자간담회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간 배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모든 수사과정을 기록·등재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게 지금도 형사절차전자문서법 등이 있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일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형소법에 이 법이 들어가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그 흐름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누락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

요. 그래서 일부 문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오프라인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은 참고인 조서를 캐비닛에 방치해 버리거나 증거서류에 집어넣지 않거나 수사기록 목록에도 집어넣지 않는 경우 비일비재 하거든요.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그게 확인이 돼 가지고 다 찾아내서 나중에 그걸로 뒤집어져서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차관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경찰이건 검찰이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증거가 생성되면 곧바로 수사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등재돼서 다 박혀 있어서 나중에 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시간적으로 누적적으로 쌓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관련해서 영상기록 의무화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저도 일응 수긍이 가는데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포렌식을 하면 이게 다 해시값 대조해야 돼서 증거능력 다툼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 압수수색 영상을 증거물로 쓰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해서 압수한 물건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이 영상은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 방편으로 쓰는 거지 압수수색 영상 자체를 증거로 쓰면……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면 공판중심주의에서 깨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상만 시청하고 재판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영상 녹화도 그것을 직접증거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영상 자체에 대한 포렌식을 통한 해시값을 대조해서 원본 동일성을 확인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사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현장의 영상 촬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가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걸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하루 종일, 일주일씩……

○**김용민 위원** 실무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차관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불온 문서, 불온 서적을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데 끼워넣기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처럼 ‘어, 당신 이 책 소지하고 있었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문제 제기한 피고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만약에 영상 촬영이 되면 그런 현상들은 거의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셨으니 그런 방식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왜곡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법왜곡죄와 관련된 공소시효 정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사기관과 검사 그리고 판사에 대한 범죄, 직무상 행한 범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논의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법왜곡죄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은정 위원 간담회 때문에……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11시에는 기자간담회가 있고 또 2시에는 의원총회가 있는데요. 의원총회 후에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구하지만 오늘은 저녁식사 후에 계속 심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송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에 대한 쟁점별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각 법률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다 일회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선정해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각 쟁점별 기관 의견은 이미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석전문위원에게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요. 특별히 기관 쪽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쟁점 5번은 지나가고요. 쟁점 6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쟁점별 심사자료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및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송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송치 없이 기록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에는 공통적으로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전체 기록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와 불송치사건 간에 기록 송부를 동등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지만 불송치사건에는

양형 등에 관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 점 그리고 수사준칙 등에 규정할 실무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현행 준수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기원 의원안에는 송치사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법경찰관 인지사건 등인데요.

고려사항 말씀드리면 송치사건을 확대하여 검사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은 검사의 수사권 여부와 관계 없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수청 사건을 전체를 송치하거나 특정 범죄에 한정해서 송치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홍기원 의원안에 있는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절차 규정입니다.

사법경찰관,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검사가 진술·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제출 자료 수령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려사항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을 입법화하는 경우에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언제냐, 예를 들면 송치된 사건의 사건기록 및 증거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명확하게 객체를 한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한 후에 검사는 조서를 쓰는 것인지 보고서를 써야 하는 것인지 그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서류 등에 대해서 증거능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내용을 규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법안을 제출해 주신 김용민 혹은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박은정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건송치와 그다음에 불송치가 함께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동등하게 같이 검사에게 가서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불송치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을 약간 다르게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피해자 쪽에서 불송치사건에 대한 어쨌든 검사의 검토, 수사 결과에 대한 검사의 보다 충실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피해자 쪽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저도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보면 인지사건 관련해서 홍기원 의원님 안에서는 송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영장청구 단계나 등등에서 검사의 개입이 초기부터 바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시정조치요구가 이미 법에서 마련돼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지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록 검토하고 채수사요구를 하는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고 만약에 인지사건에 고소·고발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고소·고발인 이의신청제도를 통한 송치제도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피의자 혹은 피해자 등에 대해서, 특히 피해자겠지요, 피해자에 대해서 면담 같은 것들을 한 뒤에는 당연히 증거에 해당하는 증거를 생성해 낼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수사가 되니까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행정절차를 위한 내부보고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면담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은, 내부 행정처리를 위한 보고서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역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증거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 제출받은 것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우회로, 우회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검사 단계에서 면담을 하면서 증거를 새롭게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게 증거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김남희 위원** 저도……

○**소위원장 김승원**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송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좀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해 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지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소·고발인이 없고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뇌물죄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누군가가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암장되거나 문힐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지사건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현장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의무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송치 사건이 제대로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묻히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채수사 요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든, 저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위법·부당한 경우에만 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한 수사라든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것들이 충분히 자료에 없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수사기관이 사건을 암장하기 위해서 좀 뭔가 하여튼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연 이것을 위법·부당이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이런 우려들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 말씀드리면 김용민·박은정 의원님안에, 김한규 의원님안에도 있군요.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자료를 우선 목록을 갖다가 작성하고 빠짐 없이 목록 작성하고 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을 다 빠짐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로 느껴져서 제가 생각한 이런 관계 서류 증거물의 전자화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인의 검사 면담 요청권이라든가 또 검사의 사실확인권이 다른 조항에 아마 반영할 예정이지시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진술인이 검사에 대한 면담요구 혹은 검사가 사건 관계자를 면담할 수 있는 것.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은 없는 거고 손솔 의원님안이나 발의해 놓으신 간사님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아직 저희가 심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게 오늘 저희 당론으로 채택이 되어서 저희가 당론 내용을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관련된 조문화도 다음에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간사님, 개정안을 소위에서 회부받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다음에 아마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론을 바로 저희가 안을 내는 것은…… 개정안은 아직 소위로 안 들어왔고……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법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사한 법안에도.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당론화되어서 저희 형사 조문에는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어느 체계하에서 어느 조문에 반영해야 될지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대안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방법’ 이것도 다른 개정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대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쟁점 6번항은 이렇게 논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7번, 8번, 9번, 10번은 특별히 논의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어느 것에 대해서 말씀……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8항의 81조에 관련해서……

○소위원장 김승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위원장 김승원 23페이지?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거기에 81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법정구속을 하거나 할 때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1항의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이제 법원의 직제가 바뀌어서 법정 법원경위가 아닌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하는 것으로 문구가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법원에서 혹시 제출한 조항이 있나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있는데?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저희가 의견을 따로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바로 위원님들께…… 간단합니다, 내용이.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항은 교도관을 추가하는 것이고, 2항은 법원경위를 보안관리대원으로 변경하는……

○소위원장 김승원 대개 법정에 다 있는 자리에서 누가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구치감 쪽으로 데리고 가느냐 그 문제인데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은 상세하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명확하지가 않으면 실제로 교도관들이 신병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하고자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상세하게 규정을 하셨는데 저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김용민 위원 일응 그렇긴 한데 이걸 받아 봤으니까 좀 검토를 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검토를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에서 여러 사항 중에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결정 관련해서 지금 김한규 의원님안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사법경찰관이 압수물 환부, 가환부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압수물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압수할 압수 물건이 몰수·추정의 대상이 되는 금품이거나 당사자 간의 소유권 분쟁이 다 튀지는 고가물 등 민사법적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증거의 반환 여부는 기소권자가 결정할 문제로서 권리와 책임이 검사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감안해서 지휘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박은정 위원님 말씀 주실……

○박은정 위원 저는 교도관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의가 없습니다. 지난번……

○소위원장 김승원 예? 다시 한번만.

○박은정 위원 교도관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압수물…… 지금 아마 24페이지……

○박은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 하다가……

○소위원장 김승원 24페이지, 왼쪽에 보면 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현행은 검사가 주체, 사경은 검사가 지휘하는데 지금 박은정·김용민 의원님안은 주체를 검사에서 사경으로 바꾸고 사경이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사경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현행 유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은정 위원 저는 저희 안이 보다 더 실무 수행에 더 가깝고요. 이 부분을 굳이 현행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압수할 물건이 첫째 증거물인 경우와 몰수·추정의 대상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증거물을 반환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몰수·추정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반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인 것이고요. 또한 소유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당사자 간 분쟁이 많아서 민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검사의 지휘로 압수물에 대한 환부, 가환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꼭 ‘지휘’라는 용어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 위원** 일단은 지금 이 형소법 개정안이 검경 수사의 협력 관계를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다면 ‘지휘’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변경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문을 수정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무부 의견을 조금 더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위원장님, 23페이지부터는 사실 세부 조문이긴 하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처음부터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우선은 7번 특사경부터 보고를 드릴까요?

○**김용민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사실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논의해서 정리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먼저 좀 조문화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더 논의를 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론으로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을 조문화하면서 그 조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게요. 이게 보니까 긴급체포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론으로 현행 유지를 결정을 했는데 이 안은 아직 그것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것은 저희 당론을 말씀드리고 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에 따라 정리를 해 주시면 그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특사경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도 저희 당론 내용 중에 포함돼 있는데 조문화돼서 정리된 후에 다시 위원님들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번, 8번은 다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11번째,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자 확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러면 쟁점별 소위자료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확대와 그다음 항목인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제기권 신설은 같은 맥락이라서 2개 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고발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권, 지금 고소인만 돼 있는 부분에 대해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그 내용이고요. 지금 현행 없는 이의신청기간을 의원님안별로 30일,

60일, 90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고발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권자로 넣을 것인지 그리고 이의신청기한을 어떻게 제한하실 것인지 보시고.

다음, 33페이지 보시면 의원님안 중에 현행 3항에 후단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197조의2에 따라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후단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완수사 요구의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후단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고소인·피해자 등의 이의제기권 신설입니다. 새로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서영교 의원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소인·피해자가 사법경찰관과 검사에게 6개월 이상 수사 지연되거나 피해자의 헌법상·법령상 권리가 침해되거나 기본적 수사행위의 현저한 해태가 있을 때 사경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의제기가 있으면 사경이나 검사는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조치 내용은 담당자 변경, 수사부서 재지정, 수사 처리 기한 등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내용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유 중에 피해자의 헌법상·법령상 권리침해 부분이 너무 넓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객체에 검사 들어가는 게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쟁점 열한 번째는 저희가 숙의한 각론이 있어서 그건 조문화한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쟁점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제기권 신설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소인·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반드시 담당자 변경 또는 수사 부서 재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이 중에 어떤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 하거나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시 상급기관에 다시 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은 자칫하면 수사가 방해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사건처리가 더 지연될 수가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문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소위원장 김승원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김용민 위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수사지연이라는 것은 요건이 명확한데 피해자의 형법상·법령상 권리 침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분명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조항으로 계속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사지연이 막연히 길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사실은 좋은 제도이긴 한데 악용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취지는 살리되 악용 가능성은 조금 낮추는 문구가 필요한 것

같고,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와 수사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검사가 들어간 부분도, 여기도 지금 어떻게 정리하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박은정 위원 검사는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간 연유가 뭐냐 하면 피해자단체, 특히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단체에서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그리고 예컨대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성착취 동영상이나 이런 것이 더 있는데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피해자만이 아닌 가해자, 주거지나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있는 증거물 이런 것들을 경찰에 압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법안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든 범죄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자칫 수사지연이라든가 수사 방해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게요.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별로 순차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계속 수사관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수사부서가 재지정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제도 아닙니까?

○박은정 위원 신설되는 조문입니다.

○박균택 위원 이의제기 있고……

○소위원장 김승원 열두 번째.

○박균택 위원 아,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데 여기에…… 좋습니다. 뭔가 좀 제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여기다가 검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가 지금 보완수사권을 행사를 못하도록 제약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검찰에 의한 사건 지연 이것도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경찰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서로 방치하듯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찰이 지연하는 부분이 많습니까마는 검사 역시도 지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의제기는 반드시 듣고 또 상급자에 의해서 통제되는 감시장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사도 놔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이 다 수사와 관련된 행위 그런 거라.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지연은 6개월 이상 처리지연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다, 고발인으로부터.

○박균택 위원 경찰이 예를 들어 수사를 피신조서 한 번 받는 걸로 6개월 만에 한 것을 가지고 지연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 같으면 송치 여부의 결정, 검사 같으면 기소 여부의 결정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처리지연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게 처음에 피해자단체가 요구했던 게 수사지연을 문제 삼았던 거지 검사의 처리지연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어서.

○박균택 위원 아니, 경찰의 처리지연 그러니까 수사는 한다, 처리는 1년, 2년 걸리더라도 수사는 한다고 하면 견제 필요성이 없습니까?

○박은정 위원 검사의 처리지연을 문제 삼아서 이의제기하겠다는 것은 그런 취지는 아니어 가지고.

○김남희 위원 아니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사실 문제제기한 것은……

○박균택 위원 그런데 검사도 마찬가지지요.

○김남희 위원 예,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만의 얘기는 아니었고……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속기를 위해서.

○김남희 위원 예.

경찰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나 다 사건이 지연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 달라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박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수사를 전제로 한 조문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김남희 위원 그거는 박균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박균택 위원 그러면 표현을……

○김남희 위원 표현을 수정해서……

○김용민 위원 구분해야겠네요.

○박균택 위원 예,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6개월 이상 사건처리를 지연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이러이러한 침해한 경우’.

○김남희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자의 헌법상·법령상 권리침해 그다음에 기본적 수사행위 이런 개념의 포괄성이라든가 불명확성이 너무 눈에 띄어서 이것을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이거나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토론을, 논의를 하면 그거는 좀 한도 끝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한번 답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참고로 한 가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박은정 위원 예, 형사소송법 규정에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번에 그건 없어야겠지요?

○박은정 위원 그대로 있는데요, 지금.

○박균택 위원 그런데 그게 살아 있다고 한다면……

○박은정 위원 이거랑 모순됩니다.

○박균택 위원 그게 지금 이미 사문화돼 버린 지가 오래인 것이고, 이 조항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박은정 위원 모순됩니다.

○박균택 위원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그 규정 자체를 사실은 없애야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저는 3개월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6개월 이상 처리 지연을 9개월로 본 겁니다.

○박균택 위원 6개월, 2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조문이 사문화돼 버린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놔둔 채 6개월 지나면 그때 이의제기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두 배를 더 허용하는 것이라 좀 이상하지요, 법체계가.

○박은정 위원 일단 검찰의 실무는 3개월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난, 초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건 사문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3개월 초과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사처리를 독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별점을 매긴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을 기본적으로 검찰의 사건처리는 가고 있다, 다만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미제가 계속 느는 문제 그것은 또 다른 문제여 가지고 그 부분, 그거를 또 삭제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건 좀 약간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3개월의 제한을 안 받습니까?

○박은정 위원 사법경찰관도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도 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없지요.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 6개월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박은정 위원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은 이 규정에 들어간 이유가 처음에 물론 검사 처리지연도 문제가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나 이런 것들을 사법경찰관이 좀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금 더 여기 담겨 있는 거여서……

○박균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리를 3개월 안에 하라는 건데 6개월 이상 수사지연할 때만 이의제기를 하면 그 3개월은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저는 3개월 플러스 6개월로 이해를 했습니다.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그걸 6개월 이상 처리지연하든가 9개월 되면……

○김남희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소위원장 김승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박균택 위원 그러면 9개월로 늘려 주는 효과가 되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그때는 수사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남희 위원 조문상으로는 신고 후 6개월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박균택 위원 지금 어쨌든 구체적인 이의 절차는 두지 않았을망정 고소인 입장에서는 석 달 안에 하라고 돼 있었던 것을 9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것처럼 하면 피해자의 정서에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문에는 ‘고소 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6개월이네요. 3개월 안에 처리를 하도록 하되 6개월 이상 결과 안 나오면 수사관 교체 등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네요.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이 조문으로 사문화시켜 버리는 효과를 낸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개월 하라고 했는데 6개월 돼도 괜찮아처럼 읽히는, 충돌한다는 얘가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때는 교체라는 망신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4개월, 5개월은 교체 요구도 못 하는데 3개월을 넘

었는데 그러면 괜찮다라고 이 법에서, 같은 법에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되니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읽혀지지는 않는데요. 3개월 안에 처리해야 되고 3개월 이상 되면 어쨌건 사법경찰관이 지연된 3개월 넘기게 된 거에 대한 이유라든가 설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의무는 발생하니까 3개월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3개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6개월까지 늦어지면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가 꼭 모순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소위원장 김승원 예, 저도 그렇게 읽혀져서……

하여튼 위원님들 뜻을 잘 받아들이어서 한번 조문화해 보도록 하되 사실은 개념이 2항·3항이 너무 모호해서 조금 조문화하기가, 실무상 이것을 조문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쟁점 열세 번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 자료 35페이지 고소인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입니다.

지금 현행은 피해자 등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소송계속 중인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는 있습니다.

지금 홍기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안을 보시면 우선은 공통적으로 홍기원 의원안과 서영교 의원안은 이의신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불송치 결정을 통지한 사법경찰관이 열람·등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영교 의원님은 이에 더 나아가서 개괄적, 일반적으로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두고 있습니다.

열람·등사 사유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안들이 제각기인데요.

다음 36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인까지 이의신청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 측의 인권을 보호할 실 거라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형소법에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사준칙에는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소법에 규율하시되 다른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영업비밀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 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소송계속 중 검사 보관 서류 열람·등사 제도를 참고하셔서 열람·등사 사유라든지 조건·목적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개정안을 예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데요. 1호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고요, 2호는 그 밖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경우 신청자를 피해자 측으로 제한했고요.

다음에 2항에서 사경이나 검사가 이런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받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아까 말한 소송계속 중 검사 보관 서류의 제한 사유처럼 그런 제한 사유 하나에 해당하거나 더 나아가서 수사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두었고요.

3항에는 그렇게 허가하는 경우에도 사용목적의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현행 유사 규정을 가져온 거고요.

3항에 따라서 이런 것을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통지하도록 했고요.

5항에다가 사용을 약간 제한했습니다.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

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이 필요한 범위에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조문화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김한규 위원님, 조문화를 위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반대 측의 명예훼손을 위한 용도로 침해하는 경우가 제일 큰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또 한 가지 여기서 미리 좀 검토할 것이 민사소송을 위한 목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사실 이것 꼭 막아야 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마는 보통 지금까지는 그런 용도로 고소제도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용도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용의 제공을 허락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 여기 개정안 예시를 보면 ‘사법경찰관이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결정권자가 경감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걸까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경찰관이니까 경위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담당 수사관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담당 팀장? 그러면 경감 아니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경감이 수사기록을……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팀장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경wein 조사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사관은 경위 내지는 경감 둘 중에 하나가 보통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경위·경감이 수사기록을 다 도장을 찍어서 열람·등사를 허가해 주면 어쨌건 허가권자를 굉장히 더 넓히게 되는 건데.

○박균택 위원 검사가 허용할 때도 보통 부장검사라든가 이런 쪽에……

○소위원장 김승원 예, 내부적인 전결을 받도록 하지요.

○박균택 위원 이런 것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밑의 민원실의 수사관들이 일을 처리할 때도 담당 민원 전담 검사, 공판검사의 승낙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말씀대로 형사사건을 민사사건을 위한 기록·증거자료 수집 용도로 악용이라 할까요, 아무튼 그런 용도로 이용될 소지도 충분해서, 사실 형사사건 줄이는 것도 우리의 목표인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

○박은정 위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송부촉탁이나 이런 걸로 당연히 민사법정에 수사기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지금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불기소 결정 혹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수사 요청을 하는 비율이 한 3%,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재수사 요청을 해 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경찰이.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신청 사유를 상세하

게 쓸 수 있어서 뭐가 수사됐는지 알아야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고소인·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사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건데, 그래서 열람·등사를 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전 기록을 해 달라 일부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법조문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재수사가 되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고소인만 열람·등사를 해 줬을 경우에 피의자의 방어권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록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이게 열람·등사가 허용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게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좀 있는 거거든요.

수사 중이니까 수사기록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공판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 재판 확정된 사건을 열람·등사해 주는 것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 수사 중인 사건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그다음에 피해자·고소인이 있는 건데, 양 당사자가 있는 건데 그것이 공개됐을 경우에 수사 진행에 약간의 곤란함 이런 것들도 있는 거여서 이 제도가 전 기록을 전부 다 열람·등사하게 하는 것은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석전문위원님, 2항에 보면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원칙은 허가지만 단서에 보시면 상당히 넓은 불허가 재량이 있긴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59조의2……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수사 상황을 고려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불허가할 수 있는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거의 안 될 것 같은 한데.

○소위원장 김승원 2호부터 6호까지 이 심사자료에 있나요? 37쪽 심리 비공개 진행, 국가안전보장 이런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 내용은 상당히 넓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공공 질서유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그다음에 영업비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깔끔하게 조문화하는 게 참 쉽지는 않네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더 있으신가요?

어쨌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에 필요한 범위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조문화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논의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열네 번째, 범죄혐의 통보 또는 수사의뢰절차 신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14번하고 15번은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4, 범죄혐의 통보 및 수사의뢰절차 신설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에는 범죄혐의 통보의무를 신설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송부한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의 조문대비표 보시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송부한 사건과 관련해서 똑같은데 이것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서영교 의원안 2항에는 검사가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의 범죄혐의를 발견할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증거 및 자료를 통보해야 된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개의 내용을 저희가 고려해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항, 검사는 송부받은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다른 범죄혐의 발견 시를 대비한 거고요.

2항은 검사는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직무와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이것은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견제 차원에서 들어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2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범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요.

4항에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 요청을 받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여야 된다.

이게 다 보완수사와 연결되는 건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 범죄혐의를 발견했으면 추송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1건을 넘는 다른 범죄라면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타 범죄의 단서 발견 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원총회에서 반영하기로 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러면 제가 15항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김한규 의원안에 있는 새로운 신설 조문입니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인데요.

1항에 보시면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발견 시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2항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 요청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려사항 말씀드리면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일반 행정직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첩 요청에 무조건 응하도록 하면 같은 수사 범위 관할을 정하고 있는 법률 간에 충돌 우려가 있어서 2항은 삭제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1항만 남기실 수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개정안 예시를 하단에 마련하신 거고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쟁점 15번 포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245조의9 3항 문구인데 '1항 및 2항에 따른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자는'이라고 하는 게, 그 위의 1항·2항은 '수사기관에'라고 돼 있는데 3항도 '수사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1항에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일반 통칭해서 '자'로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김용민 위원 조금 어색해 보여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표현을 한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6번, 17번, 18번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16·17·18번 재정신청과 피의자 재정신청제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정신청제도는 현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및 일부범죄의 고발인이 재정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피의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민·박은정 의원안과 김한규 의원안을 보시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는 모든 고발인에 대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과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법원을 2개 안 모두 지방법원으로 심급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범죄에 한해서 재정신청을 확대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고발범죄로 확대하는 게 맞는지, 법원행정처에서는 특정한 범죄로 한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피의사실공표죄 경우에도 제한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피해자 인격권 침해가 있어서 현행 유지가 어떤지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관할법원은 심급 구조를 봤을 때 고등법원이 바람직합니다만 사건이 많이 확장돼서 법원의 부담을 줄이실 의향이시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 개선과 관련된 것인데요.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항고기각 결정 또는 재기수사 후 공소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현행은 10일인데 30일로 늘리는 부분이고요. 증거조사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증거신청권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결정유형에서는 재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등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고요. 다음에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니라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고려사항 말씀드리면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만 피의자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은 지금의 형사소송 구조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고요. 재수사결정 같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에게 의무 이행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같은 경우에는 재정신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에 재정신청의 남용을 우려해서 담보 제공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담당자를 결정하는 부분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47페이지입니다.

피의자 재정신청제도를 새로이 신청하자는 겁니다. 지금 없는 제도입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있는 거고요.

관할법원 지방법원으로 바꾸고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나 타관송치에 대해서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서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고 제도를 도입하신다면 공소청 항고 전치주의를 넣으실 것인지, 관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기한이나 절차의 세부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론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하나만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44페이지의 개정안 예시에 재정신청으로 고발인 재정신청 부분을 일부 확대하면서 예시를 세 가지 정도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것 전문위원님이 예시 넣으신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법원행정처 의견을 참조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취지는 동의하는데 아동학대범죄가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됐던, 교사들이 고발을 당했을 때 이 형사 사건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다 보니 학교로 빨리 돌아가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에서 교사가 학교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게 피의자의 지위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줘야 된다는 논의도, 요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범죄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나열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고발인 전체로 확대하실지 아니면 특정 범죄로 한정하실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김용민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고발인 전체 범죄로 법안을 제가 마련하긴 했는데 일단 그런 문제의식은 제가 동감을 하고, 그렇다면 고발인의 재정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민주당 당론으로 특별법에서 전건송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궤를 같이해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결정유형에 있어서 재수사결정 관련해서는 지난번 법원행정처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이 재수사결정은 결정유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문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19항 구속기간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현행 유지하기로 정리가 되어서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유 추가 문제인데요. 20번째 쟁점입니다.

이것은 당론은 아닌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자료 53페이지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속사유로 있는 독립적 구속사유로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 중요 참고인·친족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구속 시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올리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 그리고 위해 우려,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예방 구금적 성격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이 부분은 현행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속사유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저도 현행으로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저희가 검토를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정 위원 사실상 실무상으로는 이 부분이 구속사유에 들어가서 판단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김용민 위원 사실은 70조 2항에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돼 있긴 해서 독립된 사유로 삼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번 쟁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남희 위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문이 발의되게 된 계기는 최근에 여러 교제폭력이라든지 스토킹범죄로 인해서 구속사유가 좀 애매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속을 추진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생기다 보니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우려를 하면서 그런 우려들을 좀 담아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구속사유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 제기하신 취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한 취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수사인권보호관 신설인데요. 수사인권보호관 등 인권침해·수사권 남용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 당론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중수청법 등 개정에 의해서……

○김남희 위원 이 법에 안 담는다는 말이지요?

○김용민 위원 각 조직법에.

○소위원장 김승원 조직법에 넣는다라는 것으로, 김용민 위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수사인권보호관은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등, 수사지연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을 독립된 보호관을 통해서 인권 보호를 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 취지를 개별 조직법, 각 조직법에 조직과 관련된 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서 당론으로 각 조직법에 집어넣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위원님들 다른 논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째는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유사한 취지, 맥락이라서 조직 법령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25번째, 공소청 남용의 효과 법제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자료 6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위법수사 및 공소권 남용 시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는 이것을 세부화해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2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 제기’로 법문을 다듬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본문이 67쪽 표 우측에 있는 것일까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 예시에 보시면 ‘공소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위원장 김승원 김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그런데 판례의 취지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이것이 소추재량권 일탈이다라는 거고, 사실 공소권 행사는 무조건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라는 표현이 그렇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든지 조금 표현을 바꾸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렇게 적절한지……

그리고 중대한 위법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빠진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개정안과 같음’이라고……

○김남희 위원 아, 그건 똑같고 그대로 가고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3호만 법문을 좀 수정……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법률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라서 좀 순화시켜 본 겁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의적…… 하여튼 제 생각은 공소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인한테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라는 표현은 법문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같은 공감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추재량권, 재량권이라고 하니까 재량행위가 떠오르고 그다음에 재량행위는 행정법에서 남용과 일탈 두 가지의 위반행위로 개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그러니까 남용보다는 일탈이 더 큰 거고 일탈에서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렇게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법원행정처 차장님, 여기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저희가 사실은 공소권 남용에 관해서는 사법상 권리 남용, 자기한테 별로 이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불이익만 주는, 해를 끼치는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권리 남용으로 흔히 얘기하고 있고 그게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권 남용으로 들어와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피고인한테 불이익을 준 경우 해서 그걸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표현으로 판례가 정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개정안 예시 부분에서 공소권 남용 부분은 그 뒤에 있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기본적으로는 현행 유지되면서도 판례에 의해서 계속 해석이 돼 왔어서 개정안이 필요 없지만 판례를 구체화하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정도로는 저희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저희가 심리를 하다 보면 그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그리고 그 뒤로도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야 했던 사람이지요, 제가. 기억하시겠지요.

공소권 남용이 사실은 논의된 게 유우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복 기소이기 때문에 너무 명확해서 법원이 처음 인정했는데 그 전에는 법원이 이렇게 요건만 얘기했지,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지나치다 보니 이번에 입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입법취지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이시기소, 분리기소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한 번에 기소할 수 있는데 일부러 ‘피고인, 너 한번 혼 좀 나 봐라’ 해서 계속 나눠서 기소하고 끝날 쯤 되면 추가 띄우고 끝날 쯤 되면 추가 띄우고 해서 이렇게 기소했던 것들이 주로 많이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법원은 한 번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법원이 앞으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법 통제를 하는 기관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나 박은정 위원님이 만든 이 안으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2호·3호는 추가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인데 다만 3호를 김용민·박은정 의원님안으로 구상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 개정안 예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차장님께 의견을 구한 것인데요. 차장님 의견은 어떻다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김용민·박은정 의원안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원안대로, 그러니까 김용민·박은정 의원님안대로?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염려가 있어서 심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요. 남용보다는 일탈이 뭐랄까요, 한계를 더 벗어난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구체적으로.

○**소위원장 김승원** 3호, 그러니까 김용민·박은정 의원님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다른 논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7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26·2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새로 도입하자는 내용이고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해서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소환해서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인 것 같고요. 개정안 예시는 밑에 되어 있습니다. 서면을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9페이지입니다.

압수수색 시 참여권 구체화하는 부분입니다.

현행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미리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가 불참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는 여기다가 항들을 더 신설해서 이러한 예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영장 일시·장소를 통지하고 거기다가 집행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영장 집행 시 의견진술의 권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조의3을 신설해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영장집행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압수수색조서의 기재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지를 하지 않는 당사자가 불참의사를 명시할 때, 급속을 요하는 때가 해소한 경우가 어떤지 좀 불명확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통지를 하고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긴급·예외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서 영장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일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지금 법원에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법무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들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심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이 수사의 밀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9% 막 이렇게 되고 인권침해적인 문제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가는 거여서, 수사와 관련한 부분은 법무부는 일단 없겠지만 아마 사경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게 적용이 될 텐데 그러면 법률가로서 우리가 수사 통제하는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법무부는 계속 그런 입장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현재 영장이 그냥 99% 발부되었다는 전제 사실과 관련해서 2024년 국정감사 당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특정용 영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발부율이 100%에 달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에 대해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4년도에 법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77%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압수수색 사전영장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형소법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대물적 강제처분의 첫 단추인자 헌법상 대원칙인 영장주의에 관한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급박한 시간 내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의 밀행성과 그다음에 증거 확보의 신속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영장을 검토하시는 영장법관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면

이게 검사, 수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사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해서 어떻게 연락해 가지고 의견을 들을 것인지, 듣는 절차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것이 수사의 밀행성과 수사의 신속성을 굉장히 저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입장이 대해서 지난번에 그것은 얘기를 하였고. 일단 이것이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시려고 했다가 입법화, 법조문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입장에 있어서 이게 들어간 거여서, 운영 과정에서 지금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보다 수사의 밀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규칙으로 정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압수수색 77%도 저는 굉장히 높은 발부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운영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통해 가지고 인권침해적인 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이런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박은정 위원 아니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간략히만……

○박은정 위원 아니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사경에 올라온 영장을 점검하고 청구하는 역할이 앞으로 같이 등재될 텐데요. 직접수사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검사의 영장 통제를 받은 다음에 다시 법원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지금 심문 절차까지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할 분담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다. 검사와 판사 간에 어쨌든 수사 통제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로 그런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 이중의 통제 방법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 혹시 토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사가 수사를 안 하니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또 거기서 일부 기각할 것은 기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런 곳도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차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도 가능,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라든가 대상을 더 구체화하거나 확대하는 의견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협력 절차에서도 내용이 규정되어야 되고 영장이 올라왔을 때 영장 검토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게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시스템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는 법관이 어떤 때 심문이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만약에 기일을 잡게 될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여부에 관해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 특히 전산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별지로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 대상이 있을 경우에 어떤 일부를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절차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영장이라는 사법의 판단 작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려는 그런 제도로 저희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같은 경우에 어느 회사에 압수수색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영업기밀도 있을 수 있고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심문기일 지정이 있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지금 현재로는 피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피의자의 요청에 따른 심문기일 지정 제도는 이 법안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 수사기관의 신청에 따른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궁금해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들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할 때는 수사기관이 적절한 사람 신청하고 그리고 없다고 그러면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사실상 이 압수수색 판단이 작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단 몇 건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는 계기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압수수색 심문 절차 도입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옛날에 OLED 가지고 국내의 큰 대기업들이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어느 한 기업체가 먼저 고소·고발을 해서 타 업체의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그 핵심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하게 될 때 거기서 이런저런 것을 압수수색하다 보면 거기에 회사의 기밀이라든가 특허 같은 것들이 압수수색이 되기도 하고 검찰로 복사해서 옮겨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판사는 심문기일을 한번 잡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심문기일을 잡아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상정해서 하는 거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심문기일 잡으려는 판사가 있겠습니까? 그것 대충 압수수색 전담, 이것도 영장전담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대략 사건이랑 이것 압수수색영장 보면 하루에도 100건씩 도장 찍으시잖아요, 서울중앙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충 다 뭐 하려는 건지 알지요. 그다

음에 거기 또 원칙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 일부 기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큰 사건이라든가 어려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판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필요성은 느끼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것 법안을 내신 위원님께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123조의3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읽어 봐도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 제123조의2에 규정된 사람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 및 그 방법 등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김용민 위원** 이게 사실상 판례에서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포렌식한다, 압수수색을 하면 그 자리에 가서 포렌식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영장에는 검색어 뭐뭐뭐를 넣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라라는 형식적인 영장들이 보통은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참여권이 보장돼야 이것은 대상 아니다, 이것은 빼라라고 그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통지를 해 줘야, 정보를 제공해 줘야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일단 필요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당론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니니 내부적으로 조금 더 숙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6·27은 내부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요, 일단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지 제가 지금 딱 떠오르지가 않아서 한번 여쭙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스물여덟 번째 조건부석방 구속제도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71페이지, 조건부석방 구속제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영장에 구속·불구속 택일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보석 시 보석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을 때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조건을 붙여서 피고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보석조건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 하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저도 예전부터 현직에 있을 때도 고민하고 있었던 제도인데요. 지금 구속제도가 쉽게 말해서 구속 아니면 석방이기 때문에 판사들도 건건마다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약간 중간 영역에 있으면 이런 조건을 붙여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요즘 MBK

사건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기각이 돼 갖고 결국은 홈플러스가 희생절차가 폐지되는 데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만약에 조건을 붙여서 석방을 시켰으면 그쪽 오너들이 조금 더 희생절차에 약간 긴장감을 갖고 협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것은 법사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특히 법안을 제출해 주신 박은정 위원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저번에 법원행정처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가해자를 구속해 버리면 피해자인, 주로 여성이겠지요, 아내 입장에서서는 그 가해자의 경제 활동으로 가계가 유지가 됐는데 가해자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 그러나 가해자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위해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석방조건부로 하되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조문화했고 이것은 외국에도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조해서 들어갔는데 이 구속 관련한 제도는 굉장히 첨예하게 많은 의견들, 논란들, 논점들이 많아서 이번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서 깊이 있게 숙의가 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에 천천히 심사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옛날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나가 있을 때니까 2005년도에 논의에 참여했던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우 관심을 끌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도 많고 그렇지만 현실은 조금 직업이 좋고 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에게 조금 더…… 우리의 입법 의도와 달리 그렇게 운용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또 비판론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반대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를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에 묻어서 함께 처리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별도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원행정처차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항 구속사유 추가 부분에서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우려에 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행정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사실은 저희가 검찰개혁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도 지금 더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컨대 압수수색 심문제가 사실은 검찰이든 사법경찰관이든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 남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법원이 지금 계속 재판기 찍어 내듯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주는 이 시점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사전심문제와 같은 것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도 진지하게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제 입장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건부석방 구속의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그래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예컨대 기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런 조건 붙이지 않고 기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또 참고인이라든가 어떤 누구에 대한 위해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영장전담판사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법원이 기각 후에 추가 범행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도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라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도양단이 아니라 뭔가 조건을 붙여서 석방을 하고 전자장치를 갖다가 해서, 그런 대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늘 해 왔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듣게 된 것이고요.

김용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그냥 가만히 있을까 했는데 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저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차장님, 이게 조건부석방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제도가 만약에 도입됐을 때 운용을 하는 게 원래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사안인데 조건부석방을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김용민 위원** 원래 발부될 사안인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조건부로 석방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용이 돼야 불구속 원칙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큰 줄기에서는 그러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논의를 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그런 확고한 입장이 저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건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서 자칫 구속 피의자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동의합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사전심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신속한 증거 확보 때문에 필요한데요. 지금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시간이 그다음 날 내지는 그러니까 이 근무일 이후에 발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한 금요일 날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주말에 영장을 검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다음 주 월요일에서야 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거의 사오 일 이후에야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범죄 현장에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

면 좋겠고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발부되는 시점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삼 근무일까지 소요되는 상황에서 심문기일까지 지정하게 된다면…… 수사 지연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말 당직은 있지 않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계시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차장님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주말 당직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해서 기각해 가지고 재청구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입법정책적으로……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아까 금요일 날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접수가 됐는데 법원에서 토요일 날 당직 판사가 도장 찍어서 보내지 않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 같은……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니까 주말 당직이 있으니까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많은 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님이 아니면 당직 검사님께서 영장을 검토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균택 위원 저도 이게 사전심사제의 장점·단점, 여러 가지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입장이고 판단이 안 서서 발언을 좀 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많이 남용돼 왔다는 인식을 갖고들 계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신속성 또 보안성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이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났던 사례를 생각하면 도입에 찬성을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시간의 문제, 기간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법원도 주말 당직 판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 주는 전제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금요일 날 청구했는데 월요일 날 그때 한번 심문기일 잡아서 판단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신속성 문제를 훼손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그런 정도의 운영 약속은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29번 논의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30번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신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심사자료 75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재량으로 피의자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는데요. 김용민·박은정 의

원안에서는 피의자 진술에 대한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면서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최초의 진술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녹화물이나 녹음은 전문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청에서는 필요한 경우 녹음은 받을 수 있되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어떠세요? 저는 필요한 제도로 보이는데.

○박은정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 논의를 한차례 해 가지고 경찰청 의견도 들었고, 경찰 입장은 현재 한 30% 정도 시설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 과정의 영상녹화 혹은 녹음이라도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번 심사에서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심사를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는 일단은 오늘 이번에 같이 통과시키고 시행만 1년 뒤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박은정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경찰은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 시설 하는 데 있어서 1년까지 필요할까 싶긴 하거든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전에 녹음을 해 놓으면 그것을 다시 재생할 때 다 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소요돼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요즘 AI가 녹음도 녹취 형식으로 다 해 주고……

○김용민 위원 순식간에 해 줍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중요 내용을 또 정리도 해 주기 때문에 발달된 기술에 따라서 충분히 녹음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이게 경찰관의 재량을 없애고 의무화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참고인,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의무입니까? 조사를 안 받을 의무도 있는데 영상 녹화 조사까지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나 당사자가 원치 않을 때는 예외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김용민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요? 그러니까 현행도 피의자는 녹음·녹화를 할 때 동의를 받지는 않고요.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확대하면 피의자에 대한 동의는 굳이 받을 필요는 현행과 같이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영상녹화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녹음 정도로 일단 충분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상 준비나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하는 것들 그리고 오히려 영상녹화 때문에 수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실무의 의견들을 좀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 과정을 녹음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실제 사건이 조작되고 왜곡될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과정에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전에 면담 절차라든가 별도의 조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다 끝내 버립니다. 그때는 또 변호인도 참여 못 하게 해서 면담이고 차담이니까 변호인 나가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회유·협박들이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 단계에서부터 녹음을 쫓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적어도 녹음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에 같이 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어쨌든 조사·면담 등 명칭에 불문하고라고 개정안 예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직 피의자로 입건이 안 된 상태일 수 있는……

○김용민 위원 아니, 피의자로 소환을 했는데 소환해서 피신조서를 받기 시작하기 전 단계.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입건은 이미 된 사람이 피의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신문조서……

○소위원장 김승원 사전 면담 같은 것.

○김용민 위원 왜냐하면 피의자라고 써 있기 때문에 입건이 된 뒤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김남희 위원 입건은 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김용민 위원 예.

○김남희 위원 그런데 동의를 하는 것으로 예시는 돼 있는데 이걸 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민 위원 아니지, 이거는 그 앞에 다, 개정안은 지금 따로 말씀하신 거고……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항은 피의자 신문은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고요. 2항은 신문 외에 다른 조사·면담 등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 동의를 받아서 녹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남희 위원 신문과 신문 아닌 것을 구분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소위원장 김승원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실은 문답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문답이 조서 내용대로 100%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가 없고 작성자의 의도라든가 혹은 축약에 따라서 취지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건 피의자를 위해서라도 녹음을 해 놓고 밀봉을 해 놓은 다음에 피의자가 원하는 때에만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더 논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1번, 32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3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박은정 위원 하나만 더 얘기……

○소위원장 김승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는데, 해당하는 2항은 약간 조금 본말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술회유를 하거든요, 피의자신문조서 받기 전에. 그러니까 자백을 유도한다라든가 이런 진술회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건데 그것을 피의자 동의를 받아서 녹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러면 안 하게 돼 버리는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을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간 전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2항이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조사·면담 이런 것은 피의자 동의를, 이게 아마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피의자를 진술회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의자가 요청을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주체가 사실 수사관이 아니라 피의자가 이 부분도 ‘녹음해 달라, 왜 나를 진술 압박하거나 회유하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수사 상황상. 그래서 지금 계속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됐던 게 피신 자체는 자백으로 다 받는데 그전에 부장검사실 가서 진술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문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소위원장 김승원 타당한 지적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요. 어쨌건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번, 피해자의 형사소송참가제도 신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79페이지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특정 범죄의 피해자 등—지금 특정 범죄 같은 경우는 특정강력범죄, 중상해 등 강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기타 범죄로 들어가 있는데요—이런 특정 범죄 피해자 등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해서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피고 사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 우리나라 소송 구조와 관련해서 이런 피해자 등에게 당사자성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사실 일본이나 독일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참가한 피해자 참가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권한이 열거돼야 합니다만 지금 서영교 의원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박은정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소송참가제도는 제가 형사소송법을 발의해 놓은 것이 있고 아마 이게 직회부가 안 돼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피해자의 형사소송참가제도는. 거기에 제가 발의한 내용에는

피해자가 양형에 관하여 혹은 증거 신청에 관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있는데 규정을 이렇게 만들면 이것은 좀 모호한 규정이 될 뿐더러 이게 그러면 참가가 뭘 참가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금 요청해서 참가제도를 넣어 달라, 제가 발의한 법에 이번에 넣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참가하는 내용, 어떤 것을 참가, 형식, 참가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문 자체로는 그게 약간 좀 문제가, 크게 그걸 답을 수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내신 것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 조문과는 좀 많이 다른가요, 서영교 의원님안과는 많이 다른가요?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참가할 수 있는 대상 범죄들은 비슷한데요.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주로 중심으로 참가권을 저희가 부여했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방식, 항목들을 좀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짐으로써 이 조문만 들어가서는 참가제도의 의미는 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박은정 의원님안을 참고하셔서 한번 더 조문을 예시안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건 박은정 의원님안도 만약에 이게 대안으로 반영이 되면 다 거기에 반영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 그게 아직 직회부가 안 돼서 심사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대안 반영되는 거지요, 그거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아니요. 그거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소위로 회부한 다음에는 대안 반영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가능한데 지금 아직 안 와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아직 미상정 상태인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체회의에도 아직 상정이 안 됐나요?

○박은정 위원 그게 전체…… 아니요. 지금 전체회의……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아직 미상정 상태입니다.

○박은정 위원 미상정입니까? 이번에 직회부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소위 직회부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번 심사 대상에서는 빠졌거든요.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석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박은정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저도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김용민 위원 저는 대상 범죄에 국가폭력범죄 피해자도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폭력범죄 피해자들도 사실은 여기 열거된 피해자들 못지않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열어 주는 것이 나중에 국가배상 문제라든가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번째, 부칙 관련된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신가요? 되게 복잡하고 다양……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것은 현행 개정안들은 다 10월 2일 시행한다 그 내용만 돼 있고 다른 부칙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에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다면 180여 개의 다른 법률이 개정돼야 되고요. 법사위 소관 법률인 경우에도 공수처법 이라든가 공소청법 그리고 또 타법인 중수청법 많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다른 법률 의 개정인 경우에 거기에 정책적인 사안이 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급하게 좀 마련할 수 없는, 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해야 될 부분입 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에 대해서 심사자료 22쪽인데요. 저희 가 지금 논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와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검사와 특사경의 수사 협력 의무 및 특사경의 협력요구권을 신설하며 특사경의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 의 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조문 예시안이 없는데 상관없습니까? 심사자료 22쪽.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또 새로 운 안인 것 같아서 조문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조문을 마련해서 차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및 기우중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 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남희 김승원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